(뒤 쪽) 작성 방법 1. 대손충당금 조정 가. ①채권잔액란에는 ㉑채권잔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되, 그 금액은 대손금부인액을 포함한 기말현재 외상매출금 등 ｢법인세법 시행령｣ 제61조제1항에 의한 설정대상 채권(｢법인세법｣ 제34조제2항 제외)으로 합니다. 나. ②설정률란에는 일반법인은 1/100과 실적률 ( 해당 사업연도의 ㉘과 ㉛의 합계금액 ) 중 큰 비율을, 직전사업연도 ①의 금액 ｢법인세법 시행령｣ 제6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2/100(201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/100)와 실적률 중 큰 비율의 해당란에 “○”표 합니다. 다만, 영 제61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, 채권잔액의 2/100(201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/100) 또는 실적률 중 큰 비율의 해당란에 “○”표 합니다. 다. ⑤보충액란 및 ⑫당기설정 충당금보충액란에는 회사가 대손충당금잔액 중 당기에 계상할 대손충당금에 보충한 금액을 적습니다. 라. ⑪당기대손금 상계액란에는 ㉗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 마. ⑱기말현재 대손금부인누계란에는 전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액에서 당기손금산입액을 빼고 당기 부인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. 2. 대손금조정 가. ㉖금액란에는 당기 대손발생 총액을 적고, 대손충당금상계액의 ㉙부인액란에는 부당상계액을 적으며, 당기손비계상액 중 ㉜부인액란에는 부당대손처리분을 적고 비고란에 부인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. 나. ⑦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⑮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하며, ⑮의 과다환입액(△)인 경우에는 ⑩충당금 부인누계액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합니다. 다. 대손충당금상계액 중 ㉙부인액은 익금산입하고, 당기손금계상액 중 ㉜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. 3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 ㉝~㊲금액란은 ｢조세특례제한법｣ 제104조의23에 따라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 신청을 한 법인만 작성합니다. 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㎡(재활용품)]